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5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박덕흠 • 구자근 • 엄태영

이헌승 • 고동진 • 박성민

강승규 · 서지영 · 강민국

장동혁 · 조지연 의위

(11인)

제안이유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이에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의과대학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의과대학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 과 또는 시설을 정하여 10년간 근무하도록 함(안 제8조 등).
-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마.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의사"란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지역의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이실시하는 입학전형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지역의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장 지역의사선발전형 등

- 제5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대학의 장은 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는 입학자의 비율, 그 밖에 지역의 사선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장학금 지원) ①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과대학 등의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 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지급절차·지급방법 등 장학금의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장학금을 다시 지원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따라 휴학하는 경우

- 2.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에 따라 학사학위의 취득을 유예하는 경우
- 3.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경우
- 4. 그 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6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 2.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역의사 근무를 완료하기 전에 제22조 또는 「의료법」 제65조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채로 반환금을 납부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로 편입된 경우 납부한 반환금을 그 사람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근무 중에 제2항제3호에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사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 다.
- ⑦ 그 외 장학금의 지급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면제, 반환금의 재지급, 반환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사

- 제8조(지역의사) 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의 면허를 받은 때부터 지역의사로 본다.
 - ② 제23조에 따라 지역의사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 중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사의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은 면허를 재교 부받은 때부터 지역의사로 본다.
- 제9조(근무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역의사가 된 사람 또는 제16조에 따른 근무중지기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사를 소집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근무기관 및 근무시설)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공공병원"이라 한다)
 -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 ②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 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같은 기관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 2. 같은 시·도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 3. 그 밖에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근무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외 근무지역 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의사의 파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의 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은 제10조에 따른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지역의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내로 한다.
- 제13조(근무기간) ① 지역의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된 사람의 근무기간은 10년에서 지역의사의 신분을 상실하기 이전에 지역의사로 근무한 기간을 제 외한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근무장소 이탈 금지) 지역의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근무기 관·근무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15조(겸직금지) ① 근무 중인 지역의사는 해당 근무기관・근무시설

- 의 장의 허가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업무 외에 다른 업 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지역의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한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6조(근무의 중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근무명령 또는 근무를 유예하거나 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명령 또는 근무를 유예하거나 근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 된 경우
 - 2.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
 - 4. 질병, 심신상의 장애,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근무가 중지된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의 중지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근무기간의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 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 담의사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 ② 제1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기간을 근 무기간에 산입한다.
- 제18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에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 ② 지역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근무의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지역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지역의사를 지도·감독 한다.
 - ②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매 분기마다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기관·근무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 또는 관계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를 위반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 4. 제15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을 허가한 경우
 -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20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장소를 이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 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16조에 따른 근무의 중지 없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2조(면허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제1항 각호 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의료법」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를 위반하여 근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 3.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6개월 이상의 기 간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 4. 그 밖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면허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신분 상실) 지역의사가 의사등의 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지역 의사의 신분을 상실한다.
- 제2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 부여 및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이 근무한 시·도 또는 시·군·구 내의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을 공공병원 또는 해당 기관· 시설에 우선 채용할 수 있고,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등의 우대조 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의료발전기금

제25조(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간 의료격

차의 해소와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제7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금
-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8. 제28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 2. 제7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재지급
- 3.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수 또는 수당의 지원
- 4. 제24조에 따른 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 5.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7. 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8. 그 밖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3.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4.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및 개정
 -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의료·보건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또는 학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겸직을 허가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 술을 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